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2283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687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22832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유태훈

원고 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정호

변론 종결2021. 8. 25.

판결 선고2021.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78,153원 및 그 중 152,625,480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0.

7. 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4.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8. 8. 23.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80,400,000원, 보험기간 2018. 8. 24.부터 2019. 11. 23.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0. 11. 원고에게 피고가 2019. 6월분 전기요금 52,041,980원, 7월분 59,958,520원, 8월분(8. 1.부터 8. 23.까지) 40,632,740원, 합계 152,633,2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1. 4.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52,625,480원을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보증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2019. 6.분부터 8.분까지의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152,625,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2. 1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게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인수를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서 탈퇴하였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당시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152,625,48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험금 152,625,4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 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 일체, 계약 일체, 일부 자산, 임직원의 위임·고용관계, 기타 권리의무관계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양수도 기준일은 2019. 2. 20.로 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개설한 IBK 기업은행 가상계좌(수취인명: 한전(B))에 2019. 5. 22. 전기요금 48,935,330원, 2019. 8. 16.

41,094,280원을 각 납부한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7. 19. 소외 회사에 '전기요금 명의변경 및 보증조치 이행 촉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용인시 처인구 D의 진기실사용자로서 매월 한전이 지정한 납기일에 성실 납부하고 전기요금 납부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한까지 명의 변경 및 보증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3. 상기 기한까지 보증조치 및 연체요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2019. 8. 1. 10시 이후 계약 해지(단전)가 불가피하며, 고객님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어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에 따라 한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안내드리니 발전기 등을 사전 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갑나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은 위 통지 이후인 2019. 7. 24. 피고에게 '전기요금의 반복적 연체로 인하여 약관 제79조에 따라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 등 보증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2019. 8. 29. 소외 회사에 '당사와의 전기사용계약은 주식회사 B(피고)이며, 귀사는 당사와 전기사용계약이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B와 귀사와의 관계는 아직 양도양수 계약잔금을 치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사용자 및 요금 납부 책임은 두 회사 공동이라고 판단됩니다(현재 모든 전기요금 납부 책임은 주식회사 B임).'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제12조1) 소정의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한 적이 없는 점, ② 전기요금이 계속 체납되자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이 피고의 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 소식을 구두로 듣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9. 7. 19. 소외 회사에 대하여 명의변경 및 보증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8. 29.자로 소외 회사에게 보낸 통지에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현재 모든 전기요금 납부 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음을 명시한 점, ④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0.경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던 점, ⑤ 소외 회사가 연체된 전기요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그 입금 계좌는 피고를 위한 지정계좌로서 소외 회사가 위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계약인수 내지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험금 152,625,480원과 보험금 지급일인 2019. 11. 5.부터 2019. 12. 4.까지 약정이율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52,673원, 합계 153,378,153원 및 그 중 보험금 152,625,480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7. 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박나리

1) 제12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①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이를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은 전기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 ④ 위의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